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 유지’ 추가〉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9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에 ‘공공성 유지’ 추가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6

I. 개요

1.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7.
-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에 ‘공공성 유지’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제102조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증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illegible]

나. 검토의견

□ 2024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총 운용액은 약 1,1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51.2%(2023년도 명목 국내총생산 약 2,236조원 기준)에 달하여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측면이 있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및 신인도 상승(코리아벨류업)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당부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에 ‘공공성 유지’를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 등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국민연금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심의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¹⁾

1)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²⁾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및 운용 독립성 등 6개 기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서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점³⁾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24.9.)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대체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의 증대가 중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결과(’23. 3.)’에 따르면, 기금투자 수익률의 1%p 개선은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안 제102조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정하려는 것인데, ‘공공성 유지’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은 자산군별 평균 수익률 등 구체적 수치로써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성’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가입자인 국민의 기여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익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등의 기금운용원칙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금운용원칙 중 하나인 ‘공공성’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달성하여야 할 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원칙에 ‘공공성’을 포함하여 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